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나200095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나20009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8가합5569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임재형

피고, 항소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이경택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0.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8가합5569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2 표시 30, 34, 39, 40, 2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7) 부분 15.12㎡에서, 별지 도면2 표시 34, 33, 41, 42, 35, 28, 29, 40, 39,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8) 부분 18.23㎡에서, 별지 도면3 표시 43, 44, 45, 46, 47, 48, 49, 50, 51,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9) 내지 (13) 부분 237.83㎡에서 각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 G 개인이 아니라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석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H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석채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 그 후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호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 H 주식회사로부터 그 지상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거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마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1년경 G 개인이 아닌 H 주식회사에 석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박성윤, 판사 이의영

별지